

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, 푸드QR 활성화
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 개정·공포(25.8.29.)
- 소비자 알권리·편의성 보장,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의 제품명, 소비기한,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,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*로 제공하는 내용의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**를 8월 29일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푸드QR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

**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

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·생활정보*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(푸드QR)를 운영중이다.

* ▲식품표시, 회수,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▲원재료,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
▲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

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,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개정된 「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」의 주요 내용은 ①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②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.

① 종전에는 식품유형, 용기·포장재질,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,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.

②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, 소비기한, 알레르기 유발물질(22종)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(10→12포인트)해야 한다.

하위 고시인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,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①QR코드 표시 위치 ②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③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.

①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.

②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,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.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, 나트륨,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, 보관·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*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**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.

* 젤리 섭취 시 주의사항,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등

** 기준·규격 적용에 활용하는 '산성통조림', '살균제품', '멸균제품', '유당처리식품' 등

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'법·시행령·시행규칙'과 '고시훈령예규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<붙임> 1. 푸드QR 적용식품 표시제도 개요
2. 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(예시) ˆ

담당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호동 (043-719-2191)
		담당자	사무관	조혜영 (043-719-2182)



□ 표시대상 구분

제품 포장지 표시대상	푸드QR 제공 가능 표시 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품명 ■ 내용량 ■ 영업소 명칭 ■ 소비기한 등 날짜표시 ■ 보관방법 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질소가스충전 표시 제외) ■ 원재료명(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) ■ 영양성분(4종: 열량, 나트륨, 당류, 트랜스지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업소 소재지 ■ 품목보고번호 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(질소가스충전) ■ 원재료명(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제외) ■ 영양성분(열량, 나트륨, 당류, 트랜스지방 제외) ■ 식품유형 ■ 용기.포장 재질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생략한 표시사항을 포함한 의무표시사항 모두 푸드QR로 정보 제공</p> </div>

□ 글씨크기 확대

	현행	개선	예외
글씨 크기	10pt 이상	12pt 이상	단, 식품 용기.포장의 형태, 크기의 다양성 및 품목별 의 무표시사항의 차이로 인해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품목만 예외 규정
장평	90% 이상 (면적100cm ² 이하 50%이상)	90% 이상 (축소 미인정)	

※ 12포인트 이상 글씨크기 표시 예외 대상 면적별 글씨크기

식품 및 축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정보표시면적 50cm²이상~100cm²미만 : 7포인트 이상 (2) 정보표시면적 50cm²미만 : 6포인트 이상 (3) 유리병 형태의 소주, 맥주 제품 : 10포인트 이상
건강기능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정보표시면적 100cm²이상~200cm²미만 : 10포인트 이상 (2) 정보표시면적 50cm²이상~100cm²미만 : 7포인트 이상 (3) 50cm²미만 : 6포인트 이상


붙임2

개정사항 적용 표시 도안(예시)

□ 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

제품명	○○○ ○○
식품유형	○○○(○○○○○○○*) *기타표시사항
영업소(장)의 명칭(상호) 및 소재지	○○식품,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길 ○○
소비기한	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
내용량	○○○g
원재료명	○○, 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, ○○, ○○○○○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○○○ ○○*, ○○○*, ○○* 함유(*알레르기 유발물질)
보관방법	냉장보관
용기(포장)재질	○○○○○
품목보고번호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
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 제품은 ○○○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부정·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
푸드QR 적용

제품명	○○○ ○○
영업소 명칭	○○식품
소비기한	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
내용량	○○○g
원재료명	○○, 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, 감미료 ○○*, ○○○*, ○○* 함유(*알레르기 유발물질)
세부 표시정보는 여기를 스캔하세요	
보관방법	냉장보관
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 제품은 ○○○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부정·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
□ 영양성분 표시

영양정보		총 내용량 00g 000kcal
총 내용량당	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	
나트륨 00mg	00%	
탄수화물 00g	00%	
당류 00g	00%	
지방 00g	00%	
트랜스지방 00g		
포화지방 00g	00%	
콜레스테롤 00mg	00%	
단백질 00g	00%	
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
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푸드QR 적용

영양정보		총 내용량 00g 000kcal
총 내용량당	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	
나트륨 00mg	00%	
당류 00g	00%	
트랜스지방 00g		
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
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